

#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생산품 등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

## 심사보고서

2023. 8. 29.

사회건설위원회

### 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: 2023년 8월 11일

나. 발 의 자: 차인영 의원

다. 회부일자: 2023년 8월 24일

라. 상정일자: 제246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

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(2023. 8. 28.) 상정 의결

### 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: 차인영 의원)

가. 제안이유

○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 생산품의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관내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 
직업재활을 돕고 근로 기회 확대와 소득 증대를 통해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 
기여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○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 ~ 제2조)

○ 구청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(안 제3조 ~ 제4조)

○ 우선구매 대상기관 및 우선구매 대상물품 등(안 제5조 ~ 제6조)

○ 우선구매 이행계획의 수립 및 우선구매 촉진(안 제7조 ~ 제8조)

○ 구매 협조 요청, 공표, 포상(안 제9조 ~ 제11조)

#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: 김경진)

#### ○ 본 조례안은

-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 생산품의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관내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직업재활을 돕고 근로 기회 확대와 소득 증대를 통해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

#### ○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

- 제명은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생산품 등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」 이고 12개의 본칙 조문과 1개의 부칙 조문으로 구성되었으며,
-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,
-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하였으며,
- 안 제4조에서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고,
- 안 제5조에서는 영등포구의회, 영등포구청 및 소속 행정기관, 영등포구 출연·출자기관을 우선구매 대상기관으로 명시하였으며,
- 안 제6조와 안 제7조에서는 각각 우선구매 대상물품 등, 우선구매 이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조항을 규정하였고,
- 안 제8조와 안 제9조에서는 우선구매 대상기관에 대해서는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사항을, 그 외에 관내 소재한 단체 등에게는 구매 협조 요청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,
- 안 제10조에서부터 안 제 12조까지는 공표, 표창, 시행규칙에 관하여 규정하였음.

#### ○ 검토 결과

-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 제3조 및 제22조의3, 「장애인복지법」 제44조, 「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」 제3조 및 제7조 등 상위 법령에 의거 장애인생산품 등의 우선구매를 촉진하여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도모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, 조례 제정의 취지가 타당하고 입법체계나 자구에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### 4. 심사결과: 원안 가결

#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생산품 등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

(차인영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203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: 2023. 8. .

발 의 자: 차인영 의원

찬 성 자: 이성수, 이규선, 이순우  
의원(3인)

## 1. 제안이유

장애인 및 중증장애인 생산품의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관내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직업재활을 돕고 근로 기회 확대와 소득 증대를 통해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가.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 ~ 제2조)

나. 구청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(안 제3조 ~ 제4조)

다. 우선구매 대상기관 및 우선구매 대상물품 등(안 제5조 ~ 제6조)

라. 우선구매 이행계획의 수립 및 우선구매 촉진(안 제7조 ~ 제8조)

마. 구매 협조 요청, 공표, 포상(안 제9조 ~ 제11조)

## 3. 제정안: “별첨”

## 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」, 「장애인  
복지법」, 「장애인복지법 시행령」, 「장애인고용  
촉진 및 직업재활법」, 「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」

나. 예산조치: 필요 시 반영

다. 입법예고(2023. 8. 8. ~ 2023. 8. 12.): 의견없음

##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생산품 등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장애인복지법」, 「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」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가 장애인생산품 및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을 돕고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“장애인생산품”이란 「장애인복지법 시행령」에서 규정한 요건을 갖춘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단체에서 생산한 제품을 말한다.
2. “중증장애인생산품”이란 「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」(이하 “특별법”이라 한다)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에서 생산된 제품 및 같은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(공사는 제외한다)를 말한다.
3. “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”이란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 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장에서 생산한 물품과 제공하는 용역을 말한다.
4. “장애인기업제품”이란 「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」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업이 직접 생산·제공 및 수행하는 물품·용역 및 공사를 말한다.

제3조(구청장의 책무)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

장애인생산품 및 중증장애인생산품(이하 “장애인생산품 등”이라 한다)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.

제4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장애인생산품 등의 우선구매에 있어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5조(우선구매 대상기관) 장애인생산품 등을 우선구매 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
2.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 및 소속 행정기관
3. 서울특별시 영등포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 출연·출자기관

제6조(우선구매 대상물품 등) ① 구청장은 구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우선구매 대상물품으로 구 지역에서 생산한 장애인생산품 등을 우선 지정할 수 있다.

② 장애인생산품 등의 우선구매 대상물품은 다음 각 호의 시설 등으로부터 구매하여야 한다.

1. 「장애인복지법 시행령」 제36조에 의한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
2. 「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」 제9조에 의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
3.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 제2조제8에 의한 장애인 표준사업장
4. 「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」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장애인기업제품 생산시설

제7조(우선구매 이행계획의 수립) ① 구청장은 매년 장애인생산품 등의 구매 촉진을 위하여 장애인생산품 등 우선구매 이행계획(이하 “이행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의한 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
1. 장애인생산품 등의 우선구매 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구매계획
2. 장애인생산품 등의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
3. 장애인생산품 등 구매 촉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

4.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생산품 등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8조(우선구매 촉진) ①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장은 장애인생산품 등에 대한 구매를 우선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.

② 구청장은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장애인생산품 등 구매실적을 파악하여 우선구매 이행계획에 미치지 못할 경우 해당기관의 장에게 구매 촉진을 요구할 수 있다.

제9조(구매 협조 요청) 구청장은 장애인생산품 등의 판매 촉진을 위하여 관내 소재한 학교, 공공단체, 유관기관 등에 장애인생산품 등의 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제10조(공표) 구청장은 장애인생산품 등의 구매율 제고를 위한 사업실적에 대하여 구보 및 홈페이지 등에 공표할 수 있다.

제11조(포상) 구청장은 장애인생산품 등의 구매촉진을 위해 탁월한 기여를 한 구민, 공무원, 기업, 기관·단체 등을 대상으로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

상 및 모범구민 표창 조례」,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표창 조례」,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표창 조례」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.

제12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